

제336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2. 11. 28(월)

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135
제출일자	2022.11.17.
회부일자	2022.11.22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가.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(포항, 경주)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와 10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가족에게 도세를 감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

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-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(포항, 경주)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피해자
-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나. 감면내용

-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·자동차·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
- 태풍 피해로 인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폐차, 매매용 중고 건설기계가 폐기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정대상에서 제외
- 피해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
- 태풍 피해자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를 준용
-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, 피해와 사망 사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
- 감면기간
 - 태풍 피해자 : 2022.9.6. ~ 2024.9.5.(2년간)
 -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: 2022.10.29. ~ 2024.10.28.(2년간)

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

5. 검토의견

□ 동의안 제안의 필요성

-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, 경주지역의 태풍 피해자,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등에게 도세를 감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2022년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은 총 1,977억원(포항 733, 경주 1,244)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234억원(포항 137, 경주 97)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됨

< 사유시설 주요 피해상황 >

- 주택 : 전파 21동 / 11억원(포항 11/6, 경주 10/5), 반파 34동/8억원(포항 21/5, 경주 13/3)
침수 4,847동 / 97억원(포항 4,005/80, 경주 842/17)
- 차량 : 침수신고 총 8,182대(포항 8,117, 경주 65)

- 이태원 사고 관련 경상북도 출신 사망자의 경우 총 4명임
- 이와 관련,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을 적용하며

<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>
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-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세

특례제도과-2488(2022.11.2.)의 「「이태원 사고」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」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원 방식, 감면대상자 범위, 감면 내용 등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

<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추진 주요내용 >

세 목		부과대상	납기	소관 지자체
①	주 민 세 개 인 분*	• 사망자 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§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	8월	특광역시, 시·군
	자 동 차 세 소 유 분	•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	특광역시, 시·군
	재 산 세	• 사망자 가족 소유 토·주택 등	7월, 9월	시·군·구
②	지 역 자 원 시 설 세	• 사망자 가족 (소방분)		특·광역시, 도
③	취 득 세	•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 6개월말 內	특·광역시, 도

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,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
⇒ 주민세 개인분·사업소분(§81①1가목), 자동차세 소유분, 재산세

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⇒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

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
⇒ 취득세

- 도세감면 동의안을 통해 예상되는 감면 추계액은 주택, 자동차, 매매상사 감면 등에 대한 취득세 55.3억원, 건축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0.2억원,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(소방분) 14억원 등 총 70억원으로 예상됨

※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시세는 각각 93억원, 7억원으로 총 100억원 예상

□ 종합검토의견

- 포항·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관련 지원과 관련, 그 동안 경상북도에서는 기한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

분 유예, 세무조사 유예,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등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음

- 본 동의안은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
- 향후,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

참고

도세 감면 동의안에 따른 감면 추계액

(단위 : 건, 억원)

구 분	세 목	과세대상	감면추계액	비 고
도 세	계		70억 원	
	취 득 세	• 주택 21채(1.3억 원) • 자동차 2,450대(51억 원) • 매매상사 감면 300대(3억 원)	55.3억 원	
	등 록 면 허 세 (면허분)	• 건축물 1,000건(0.2억 원)	0.2억 원	건축 및 대수선
	지역자원시설세 (소방분)	• 피해 주택(4억 원) • 기타 피해 건축물(10억 원)	14억 원	재산세 병기
시 세	계		100억 원	
	재 산 세	• 침수 또는 파손된 주택 감면 : 40억 원 • 침수된 건축물 감면 : 30억 원 • 침수 농지 감면 : 23억 원	93억 원	재산세(주택)반과, 전과 100%, 침수 50% 감면
	자 동 차 세	• 파손 또는 침수 차량 감면 : 7억 원	7억 원	말소차량 100%, 침수 50% 감면